



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

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

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(UCCN)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(Craft and Folk Art Subgroup, C&FA)에 등록된 도시들은 C&FA의 행정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한다..

우리는 UCCN 규칙을 인정하며, C&FA 규칙과 UCCN 규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UCCN 규칙을 따른다

우리는 C&FA 회원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C&FA의 행정과 운영에 관한 일관성, 투명성,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C&FA 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.

우리는 본 C&FA 규칙의 일부로서 UCCN 사명선언문, 전략 프레임워크, 회원 지침 및 유네스코 2030 의제를 인정하여 채택하고 있으며, 본 문서에 각각 별첨 A, B, C, D로 첨부되어 있다(총칭 ‘유네스코 거버넌스 문서’로 통합).

우리는 유네스코 거버넌스 문서와 C&FA 회원도시 모두로부터 행정과 운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.

I. C&FA 조직 구조

A. C&FA 조직 구조

C&FA 의장도시 및 부의장도시 선출 절차

C&FA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를 둔다.

1. C&FA 의장도시 또는 C&FA 부의장도시를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서브네트워크 회원도시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통지는 연례회의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회원도시들에게 발송된다.
 - a. C&FA 의장도시로 약 2년 또는 C&FA 부의장도시로 약 2년을 역임하겠다는 서약과 신임장 등을 포함하는 공식 의향서를 현 의장도시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b. C&FA 의장도시에게 창의도시 시장의 지지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c. 의장도시 또는 부의장도시 직책에 지원하는 C&FA 회원도시들은 최소 2년 동안 UCCN 회원이어야 하고, C&FA 연례회의 및 UCCN 연례회의에 각각 최소 1회 참석해야 하며, 최소 1개의 C&FA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 - d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각각 UCCN이 명시하고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, 아랍국가, 아시아•태평양, 유럽•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•カリ브해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.
 - e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&FA 서브네트워크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.

- f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,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.
- g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&FA 서브네트워크의 연례회의에서 직접 또 는 전자적 수단(가능한 경우)을 통해 C&FA 연례회의에 참석한 회원도시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다.
- h. 의장도시가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경우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의 직무를 맡게 되며, 새 부의장도시의 선출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 C&FA 연례회의에서 투표가 실시된다.
- i. 부의장도시가 의장도시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경우, 선출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 C&FA 연례회의에서 투표가 실시된다.
- j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재선출될 수 있다. 단, 의장도시가 다시 의장직 을 신청하려면 2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.
- k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재임 기간 동안 서브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관리하여 C&FA 웹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보관해야 하고, C&FA 연례회의에 서 발표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C&FA 의장도시와 C&FA 부의장도시의 임무 및 의무

의장도시

C&FA 의장도시와 C&FA 부의장도시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의무를 갖는다.

- a. C&FA 의장도시는 C&FA 내에서 그리고 유네스코 및 UCCN과의 소통 측면

에서 주요 연락 담당자이며,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b. C&FA 의장도시는 UCCN 운영위원회에 임명된 C&FA 회원도시로, C&FA 회원도시들을 대표하여 UCCN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UCCN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할 책임이 있다.
- c. C&FA 의장도시는 C&FA, UCCN 및 유네스코 간의 소통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. 또한 의장도시는 회의에서 C&FA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CN과 유네스코의 계획과 의제를 C&FA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하고, 그 결과를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d. C&FA 의장도시는 UCCN 연례회의 및 C&FA 연례회의에 필요한 기획이나 조정에서 C&FA를 이끌어야 하고, 필요 시 C&FA 회원도시들, 기타 UCCN 도시들 및 서브그룹과 협력하여 UCCN 회의와 행사를 조정해야 한다.
- e. C&FA 의장도시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,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.
- f. C&FA 의장도시는 UCCN 연례회의 및 C&FA 연례회의에 필요한 계획 및 조정에서 C&FA를 이끌어야 하고, 필요 시 개최 도시, 기타 UCCN 도시들 및 서브그룹과 협력하여 UCCN 회의와 행사를 조정해야 한다.
- g. C&FA 의장도시는 서브네트워크 활동, 프로토콜, UCCN 진행상황, 서브네트워크 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든 상시 기록을 서브네트워크 웹사이트 아카이브에 업로드하도록 해야 한다.

- h. C&FA 의장도시는 가능한 한 많은 C&FA 회원도시를 참여시켜 C&FA 후보 도시의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서브네트워크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. 여기에는 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 전달이 포함된다. 평가 완료 후 C&FA 의장도시는 재검토/권고사항을 요약하여 UCCN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.
- i. C&FA 의장도시는 C&FA, UCCN 및 유네스코와의 모든 소통과 계획에 C&FA 부의장도시를 최대한 참여시켜야 한다.
- j.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 사이의 관계는 C&FA 회원도시들을 대신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.

부의장도시

- a. C&FA 부의장도시는 C&FA의 보조 연락 담당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- b. C&FA 부의장도시는 UCCN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서브네트워크의 공식적인 회원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.
- c. C&FA 부의장도시는 가능한 한 많은 C&FA 회원도시를 참여시키고 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C&FA 회원도시들의 ‘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’(Membership Monitoring Report, MMR)를 평가하기 위한 서브네트워크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. MMR 평가 완료 후 C&FA 부의장도시는 평가를 요약하여 C&FA 의장도시와 공유해야 한다. 그리고 C&FA 의장도시는 그 평가 결과를 UCCN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

B. C&FA 운영위원회

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&FA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보좌한다. 이 지역 대표들은 UCCN이 명시하고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, 아랍국가, 아시아•태평양, 유럽•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•カリ브해 지역을 대표하며, 대륙별로 각각 한 명씩 구성되어 있다.

1. C&FA 지역 코디네이터는 C&FA 의장도시, 부의장도시 및 C&A 회원도시 간 소통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, C&FA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회의 개최 전에 C&FA 회원도시들에게 UCCN과 유네스코의 계획과 의제를 전달하며, 그 회의의 결과를 C&FA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하는 데 의장과 부의장 도시를 지원해야 한다. 또한 C&FA 회원도시들이 추진하는 UCCN 관련 활동의 공동 의제를 유지하면서 UCCN과 C&FA 회원도시 간 연락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
2. C&FA 지역 코디네이터는 특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, 특정 이벤트나 이니셔티브를 위한 협업이나 지식 및 역량 이전을 진행하기 위해 지리적인 기반에서 C&FA 회원도시들과 협력해야 한다.
3. C&FA 지역 코디네이터는 예비 후보도시가 UCCN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, 새로 지정된 도시를 가입 첫 해에 UCCN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4. C&FA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,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.
5. C&FA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대륙별 해당 지역(아프리카, 아랍국가, 아시아•태평양, 유럽•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•カリブ해) 회원도시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선출해야 한다.

6. C&FA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C&FA 운영사무국이 작성한 제안에 따라 C&FA 의
장도시가 임명한다.
7. C&FA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,
C&FA 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.
8. 각 C&FA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활동, 지침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록을
관리하고, 서브네트워크가 향후 이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를
서브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한다.

C. C&FA 학술위원회

C&FA 의장도시, 부의장도시 및 운영사무국은 C&FA 회원도시들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학
술위원회가 보좌한다.

1. C&FA 학술위원회는 C&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공동 프
로젝트를 제안, 조정 및 평가해야 한다.
2. C&FA 학술위원회의 임기는 임명 후 약 2년이며,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
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
3. C&FA 학술위원회, C&FA 의장도시, C&FA 부의장도시 및 C&FA 운영사무국 간
의 관계는 C&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
다.
4. C&FA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,
C&FA 연례회의를 위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.

D. C&FA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

C&FA 연례회의는 이전 연례회의에 출석한 C&FA 회원도시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정한 C&FA 회원도시의 물리적 위치에서 개최된다.

C&FA 연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도시는 해당 연도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1년 전에 미리 의장도시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.

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&FA 회원도시들의 연례회의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선출된다.

1. C&FA 특별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.

- a.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유네스코 또는 UCCN 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.
- b. 의장도시나 C&FA 회원도시 중 10% 이상이 요청할 경우.
- c. C&FA 회원도시 중 25% 이상이 요청할 경우.

2. 통지

a. 연례회의

- 1) 차기 연례회의를 위한 C&FA 개최도시가 C&FA 회원도시들에 의해 선정된 사실을 연례회의의 요약문을 통해 통보하고, 그다음 해 동안 모든 C&FA 회원도시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한다. 의장도시와 개최 도시는 C&FA 회원도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례회의 의제와 시기 를 정하고, 연례회의보다 최소 3개월 전에 C&FA 회원도시들에게 해당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, 모든

C&FA 회원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b. 특별회의

1) 위 섹션 II(C)의 요구사항에 따라, C&FA 참가 도시 중 일부 그룹, UNESCO 또는 UCCN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특별회의 개최를 공지 한다. 모든 특별회의는 C&FA 의장도시에 의해 그리고 의장도시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. 모든 특별회의에 대한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, 모든 C&FA 회원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 통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C&FA 회원도시들이 논의, 해결 및/또는 투표할 특정 이슈에 대한 의제, 그리고 회원도시들이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에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.

3. 정족수

a. C&FA 거버넌스 규칙의 채택에 따라, 모든 C&FA 회원도시는 C&FA의 모든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에 직접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참석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. C&FA 회원도시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.

b. C&FA 회원도시들의 지리적 분산과 회의 참석 시 전자 수단의 이용을 고려할 때, 투표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해당 회의 시작 시 C&FA 회원도시의 10%가 출석해야 한다. 일단 정족수가 성립되면, 정족수는 C&FA 회원도시들의 자리 이탈에도 불구하고 최소 10%가 충족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.

4. 회의 기록

모든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는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방송되어야 하며, UCCN 및/또는 C&FA 유튜브 채널에 즉시 게시되어 UNESCO, UCCN 및 C&FA 회원 도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5. 투표

각 C&FA 회원도시는 C&FA 회원도시들의 투표가 필요한 각 조치에 대해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. 실시간으로 투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나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,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C&FA 회원도시들은 조치 안건에 대한 회의 종료 후 2일(48시간) 이후 오후 11시(파리 현지 시간) 이전까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. 회의 종료 후 이 시간대 내에 투표하는 모든 회원도시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녹화된 회의를 시청하고, C&FA 회원도시의 조치에 대해 “예, 찬성합니다.” 또는 “아니요, 찬성하지 않습니다.”라는 통보를 C&FA 의장과 부의장 도시 모두에게 적시에 보내야 한다.

6. C&FA 연락 담당자

a. 각 C&FA 회원도시는 C&FA 회원도시의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(회원도시 연락 대표자)을 임명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 연락 대표자는 공식적인 소통, 투표 및 C&FA 회원도시의 C&FA 참여 사업 행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위해 C&FA 회원도시를 대신한다.

b. 연락 대표자는 전임 연락 대표자에서 새 연락 대표자로 변경되는 공식 통보가 C&FA 의장도시와 C&FA 부의장도시에게 이메일로 전송될 때까지 C&FA 회원도시를 대행할 권한을 갖는다. 이러한 공식 통보는 C&FA 의장 도시 또는 C&FA 부의장도시 중 한 명이 수령하여 승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c. C&FA 회원도시들은 C&FA 내의 소통을 위해 최소 1-2개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. C&FA 회원도시는 C&FA 의장도시 및/또는 C&FA 부의장도시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공식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통지는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.

7. 연락 대표자는 C&FA 회원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.

- a. C&FA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C&FA 지도부와 소통하고, C&FA 회원도시의 투표를 적시에 실시하고, 상기 섹션 2(G)에 규정된 투표 방법과 시기를 준수한다.
- b. C&FA 의장 및 부의장 도시, C&FA 회원도시, UNESCO 및 기타 당사자들과의 이메일 소통을 정기적으로, 시기적절하게,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일주일에 1번 정도 확인, 수신, 회신한다.
- c. C&FA 회원도시의 요구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C&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다른 C&FA 회원도시, UNESCO 및 기타 당사자들과 소통한다.
- d. C&FA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회의, 이벤트, C&FA 블로그, 2030의제, 필수 보고, 기타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되, 어떤 경우에도 각 분기 말(3월 31일, 6월 30, 9월 30일 및 12월 31일) 이내에 제공한다. 단, C&FA는 C&FA 웹사이트에 공개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자주 게시함으로써 웹사이트 검색엔진 최적화(SEO)가 향상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.

8. C&FA 웹사이트

모든 C&FA 회원도시는 C&FA 웹사이트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.

- a. 이 웹사이트는 UNESCO, UCCN 및 C&FA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외부
공개 페이지를 갖고 있으며, 여기에는 UCCN 및 각 C&FA 회원도시를 위한
페이지가 포함된다. 각 C&FA 회원도시는 자신의 도시나 지역에 대한 링크
를 입력할 수 있다.
 - 1) 이벤트
 - 2) 문화활동, 축제 및 교류
 - 3) 2030 의제 지원
- b. 이 웹사이트는 C&FA의 거버넌스, UCCN이 C&FA에 제기한 이슈 또는
C&FA가 UCCN에 제기한 이슈를 C&FA 회원도시들이 검토, 토론, 투표, 참
여할 수 있는 내부 비공개 페이지를 갖고 있다.
- c. 각 C&FA 회원도시는 도시의 행사 및 축제, UCCN 참여를 보여주는 5-10개
의 고품질 이미지 요청 시 제공해야 하고, 적어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.
- d. 각 C&FA 회원도시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일정, 도시
간 교류 및 기타 활동, 2030 의제 지원을 보여주는 기타 조치 등을 요청할
시 제공해야 하고, 적어도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한다. 2030 의제를 지원
하는 이벤트, 교류 및 기타 활동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것
이 권장된다.
- e. 각 C&FA 회원도시는 C&FA 웹사이트의 생성,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연간
500달러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.

- f. C&FA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정보는 영어, 프랑스어 및 C&FA 회원도시가 선호하는 언어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g. C&FA 회원도시들의 회의 기록은 비공개 페이지에 게시되어 모든 C&FA 회원도시가 C&FA의 활동을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C&F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.
- h. 비공개 페이지에는 향후 C&FA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어하는 도시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.
- i. C&FA 의장도시는 유네스코, UCCN 및/또는 C&FA의 모든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뉴스레터를 최소 1개월에 한 번 비공개 페이지를 통해 C&FA 회원도시들에게 발송해야 한다.
- j. C&FA 회원도시들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, 중요한 이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